##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99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노종면 · 윤종군 · 김교흥

문금주・소병훈・박 정

박상혁 · 조승래 · 허종식

조계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 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는 이용자가 해당 부가통신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선 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자 요구사항 처리결과의 분석·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		
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	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		
	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		
	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		
	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		
	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생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